

특별공급(예비입주자 포함) 구비서류

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 신청서, 무주택서약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/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/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계약금 입금증	-	• 견본주택 현금 수납불가,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• 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 [장애인, 국가 유공자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] •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(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)
피부양 직계존속			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	
피부양 직계비속				•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	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	본인	•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
다자녀 특별공급	○		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/ 인터넷청약(청약 홈 www.applyhome.co.kr)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존속포함)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: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(상기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에 따라 "상세" 발급 바람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(상기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에 따라 "상세" 발급 바람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•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"상세"로 발급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•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○		한부모 가족증명서	본인	• 「한부모 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
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,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청약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/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(아래 '소득증빙서류' 참고)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"상세"발급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•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, 해당자	• 비사업자의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·비속 (해당자 모두)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)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 변동사항, 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"상세"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피부양자 직계비속	• 본인 :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상세로 발급) • 자녀 :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상세로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• 해외체류 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본인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자격 입증 서류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) (아래 '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' 참고)
	○		소득세납부 입증 서류	본인	•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(아래의 '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' 참고)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청약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 발급
	○		소득 증빙 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(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본인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•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"미혼인 자녀"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
제3차 대리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당첨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 / 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 -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 ※ 2005.7.1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(초)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